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

□ 차별 금지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88건, 전체의 25.8%)

- 국적·나이·장애 등에 따른 부정적 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경멸적 표현을 게재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할 경우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비록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도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부정의 의미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은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장애 차별 표현 시정권고 현황

-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현황

(단위: 건)

눈먼	병어리 냉가슴	결정 장애	장애를 앓다	선택 장애	외눈박이	절름 발이	합 계
75	6	2	2	1	1	1	88

- 수용사례: 장애차별 ^①표현을 삭제 하거나 ^②유사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③기존 제목을 직관적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지적장애 앓는 9살 동급생 옷 벗겨 쫓아낸 친구... 어머니는 CCTV 보고 '좌절'	지적장애 앓는 9살 동급생 옷 벗겨 쫓아낸 친구... 어머니는 CCTV 보고 '좌절'
②	5호선 김포·검단 연장 ' 결정장애 ' 대광위...12일 공청회, 이번엔 결정할까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결정 미루는 대광위...12일 공청회서 결정할까
③	"지원금에 눈먼 동물병원, 만삭 길고양이까지 중성화수술"	"지원금 받으려 ...동물병원, 무차별 중성화수술"

□ 자살관련 보도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72건, 전체의 21.1%)

- 자살자의 인적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거나, 자살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보도는 자살자 및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이유를 자살 동기로 단정해 보도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장소, 자살 방법 등을 공개할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 '극단적 선택' 관련 시정권고

- **극단적 선택**: 자살의 대체 표현으로 사용하였으나, 해당 표현은 자살이 극단적 상황에서 하나의 선택지로 오인될 수 있으며, 모방 자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2024.05.01.**부터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됨
- **수용사례**: 자살 사건 보도 자제 및 보도 시 [㉠]사망 혹은 [㉡]숨지다 등 객관적 표현 사용 권장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장학사 극단 선택 진실 밝혀야" 부산 교육청, 현직 학교장 고발	"장학사 사망 진실 밝혀야" 부산교육청, 현직 학교장 고발
②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 의혹 '일파만파'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 의혹 '일파만파'

□ 기사와 광고의 구분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64건, 전체의 18.8%)

- 광고를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의료법 등의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사형 광고를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 주소 등의 정보를 함께 실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사생활 침해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45건, 전체의 13.2%)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인 사인(私人)의 초상, 성명, 개인 간 사적인 통신내역, 기타 사적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와 관련된 내밀한 정보 및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유명인의 자녀 및 가족의 경우 공적 인물로 볼 수 없으며, 보도논점과 무관한 경우 자녀 및 가족의 초상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도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17조, 「언론중재법」 제5조제1항).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 신고자등 보호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31건, 전체의 9.1%)

- 특정강력범죄를 보도하면서 신고자 등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주의해야하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지목하는 진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진술자의 성명 및 주거지 등 구체적 신상을 공표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진술아동의 부모 또는 동거인인 경우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신고자등 보호)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공인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2. 부패행위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범죄사건 보도 등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11건, 전체의 3.2%)

-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표하는 보도는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피의자나 피고인의 초상 및 실명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할 경우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27조제4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③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7조제4항).

□ 기사 제목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10건, 전체의 2.9%)

- 기사 본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사건 보도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7건, 전체의 2.1%)

- 아동학대사건 보도 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할 경우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 보도의 대상이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건 보도는 이들의 성장과정 및 가치관 형성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 ①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② 언론은 아동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 묘사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5건, 전체의 1.5%)

- 범죄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의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할 경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범죄 수법을 상세히 묘사할 경우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충격·혐오감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4건, 전체의 1.2%)

-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비참한 장면을 기사화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충격적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여과 없이 게재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약 및 약물 보도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3건, 전체의 0.9%)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할 경우 일반 독자들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 ①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1건, 전체의 0.3%)

-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표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보도할 때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① 언론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② 언론은 성폭력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이나 성희롱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